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3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황명선ㆍ이정문ㆍ윤준병

정동영・송재봉・장철민

박용갑 · 정태호 · 박희승

김태년 • 민병덕 • 김우영

김현정 · 정진욱 · 김영환

역태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헌법재판소법」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.

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 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

이에 「헌법재판소 심판 규칙」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,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 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구인에는 「형사소송법」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1년"을 "3년"으로, "100만원"을 "1000만원이상 30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"을 "소환"으로, "자"를 "증인이나 감정인"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출석하지 아니한 증인		
	의 구인) ① 정당한 사유 없이		
	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		
	<u>수 있다.</u>		
	② 제1항의 구인에는 「형사소		
	송법」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		
	<u> 준용한다.</u>		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79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1년</u> 이하	<u>3년</u>		
의 징역 또는 <u>100만원</u> 이하의	<u>1000</u> 만원 이상 <u>30</u>		
벌금에 처한다.	<u>00만원</u>		
1. 헌법재판소로부터 <u>증인, 감정</u>	1 <u>소환</u>		
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			
<u>소환</u>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			
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			
한 <u>자</u>	증인이나 감정인		
2. •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		
	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		
	이나 감정인		